

#그건_연기가_아니라_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기자회견 자료집]

더 나은 영화현장을 위해 영화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촬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2018. 11. 6 (화) AM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

주최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이상길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발언

■ 유죄가 확정되어도 끝나지 않는 2차 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안지희 | 법무법인 위민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의 의의
: 안병호 | 전국영화산업협동조합

■ 성폭력 없는 안전한 영화현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
: 안정윤 | 찍는페미
: 남순아 | 한국독립영화협회
: 윤정주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반민정 | 배우

■ 질의응답 및 참가자 발언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 [기자회견]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여성문화예술연합,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공동성명>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그대들의 노동은 안전하십니까? 발표

- 일시 : 2017년 5월 11일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영화계 단위 등 총 88개 단위 연명

○ <환영 논평>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 한다 발표

- 일시 : 2017년 10월 13일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11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

-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긴급토론회] 남배우A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
다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
-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제출

*항소심 재판 동행 지원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3일 오후 4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
-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기자회견] 더 나은 영화현장을 위해 영화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6일 오전 10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
-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유죄가 확정되어도 끝나지 않는 2차 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안지희 (법무법인 위민)

1. 2차 가해 현황

- 1) 가해자와 가해자의 측근이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함.
- 2) 가해자와 그 측근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왜곡하여 언론/인터넷에 유포함. 이는 피해자의 성 이력을 성폭력 사건 재판 유무죄의 증거로 삼는 2차 가해와 유사한 양상임.
- 3) 가해자의 적극적 언론 대응으로 인하여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화 제목, 극중 역할, 촬영 씬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공개되었음. 결국 네티즌들이 조금만 검색을 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됨. 또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힘.
- 4) 가해자와 그 측근은 언론 대응에서 나아가 상고심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확대함.
- 5)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가해자와 그 측근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인터넷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고죄를 퇴치하자’면서 오히려 하나의 운동으로 세력화하려고 시도함.
- 6) 특히, 언론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끝나지 않은 진실공방’으로 몰아감으로써 가해자의 문제 제기를 정당화함.
- 6) 가해자 및 가해자 측근의 지속·반복적인 2차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견잡을 수없이 확산되고 있음.

2.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 및 한계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성폭력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도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사실들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함.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백종원 헐박녀’)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고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었음.

-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석되기보다는 의견의 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겉으로 보기에 사실은 적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음.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이를 법률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속 반복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2) 모욕죄

- 욕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검찰은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함. 이에 대하여 대리인이 항고하는 수고를 들여야 했음.
-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기간 6개월이 도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 그런데 수많은 댓글을 바로바로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인데, 피해자가 언제 댓글을 발견하였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당함.
- 지속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3)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이라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어서, 마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관여하였던 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우만을 처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의 인적사항 공개나 2차 가해는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하는데, 해당 규정은 성폭력 피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즉 어느 단계에서부터 신고인이 피해자가 되는지 불명확함.

4) 정정보도 청구(기사 삭제 요청) 및 민사손해배상청구

- 잘못된 언론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는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사의 2차 가해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함.

3.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생각해볼 과제

- 1)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음. 모욕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비방의 표현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짐.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 지속, 반복적인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여야 함.
- 2) 특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 임을 입증하는 문제와 ‘사실’ 인지 의견에 불과한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함. 따라서 피해자를 둘러싼 인적사항이나 여러 사실관계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행위로 정의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3)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하여 발생한 2차 피해도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또 하나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 4)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여론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개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댓글이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특히 일반 대중이 아닌 언론사가 가해자의 주장만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나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의 의의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남배우A 성폭력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촬영 중 과몰입에 의한 연기로 업무상 행위’로 판단하여 남배우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영화를 위해선 연기를 위해선 합의되지 않은 상대 배우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용인한 것입니다. 그간 영화노조는 관행으로 진행된 현장을 거부하고 씬이 있는 현장을 요구했고 근로기준법 등 마련된 제도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렇게 현장은 노동시간의 개념을 세우고 법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합의되지 않은 현장, 동의 되지 못한 현장 진행은 계획된 현장을 지향하고 법에 따른 현장을 지향했던 우리에게 용인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에 선뜻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위는 우리 노조를 포함하여 여성영화인모임,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의 영화단체 및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대위가 꾸려지던 초기에는 영화계에서 여성의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거나 연대의 목소리가 구성되지 못했기에 성추행 등의 사안에 있어 대처하고 있던 여성단체의 제안으로 영화계 단체들이 공대위에 구성되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법원 재판방청 등 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촬영 현장에서 여성 배우의 위치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참여했던 현장을 돌아보면 베드씬을 연출하거나 사건 영화처럼 강간 장면을 촬영할 경우 여성배우는 대개 피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의 내용도 그렇기에 특별히 잘못되었다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성배우의 손에 의해 감독의 입에 의해 여성배우의 연기가 정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합의는 촬영에 임박해서야 노출 수위와 현장통제에 대한 것이 고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촬영될지는 촬영을 해봐야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의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촬영에 임박해서야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없으니 여성배우의 입장의 난처함은 이해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촬영이 별 탈 없이, 늘어지지 않고 끝나기를 바라는 스태프들의 입장에서는 촬영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위한 시간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촬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십상입니다. 이번의 공대위 활동을 통해 그러한 현장에서 여성배우의 고통에 대해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공대위로 결합하면서 1심의 무죄선고는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 및 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유죄판결로 뒤집어졌고, 지난 9월 13일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을 두둔하는 영화계 쪽의 반응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 배우가 무슨 죄냐 묻습니다. 감독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연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현장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감독의 지시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 죄책을 물어야 감독의 죄책 혹은 제작사의 죄책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공대위 활동은 다만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우리의 현장을 이제는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간 간과해왔던 것을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현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영화계 내외에서의 연대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우리의 일터, 영화계를 바라며

안정윤 (찍는페미)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의 2017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계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입문 준비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행동들이 문제라고 느끼지만 참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상황에 대처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공적으로 대처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없었던 영화계 전반의 상황에 대한 반증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와 나의 동료들이 속해있던 영화계라는 사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의 병폐에 찌들어 있음에도, 우리는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일이라서, 나의 꿈이라서 우리는 그 실낱같은 희망에 입술을 깨물며 부조리한 일들을 참아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이 잔잔한 호수에 돌맹이를 던지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누군가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냐고 조롱했지만 물결은 파도처럼 거세졌고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고자,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ME TOO로 응했다.

찍는페미는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연대체 구성, 다방면의 페미니즘 행사에 연대하면서 목소리를 키워왔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것을 목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안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만 했다.

우리는 영화의 완성을 위한 부속이 아닌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답게 일하기 위하여 성폭력 없는 안전한 영화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영화계에 산재한 병폐들을 개인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집단의 문제로 여기며 행동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나’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끝으로 오랜 시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각계 단체와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는 영화계가 응답할 때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은 특정한 장면을 얻고자 했던 남성 감독과 남성 배우의 공모에 의해 여성 배우가 성폭력에 노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정도나 시기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단편영화 구분 없이 감독을 비롯한 제작자들이 ‘진정성’을 담아내겠다고 배우에게 고의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배우의 연기가 아닌 한 인간의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담고자 하는 이 방식은, 배우의 전문성과 그가 인격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무시한 행태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특수성’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묵인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구조를 보지 않고 ‘왜 지시에 따른 사람만 추궁하냐’는 것은 결국 폭력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관결을 계기로 변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예술’이나 ‘진정성’이란 변명으로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작자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영화계에 있는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영화계에서는, 특히 감독과 PD, 제작자를 비롯한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이슈에 대해 담론과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폭력을 묘사하는 장면이 정말 필요한지, 그 장면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1월,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긴급포럼에서 손희정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재현 상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는 종종 현실에서의 성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제작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폭력의 장면들이 ‘엑기스’라는 이름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위험한 장면이나 민감할 수 있는 장면은 사전에 배우와 협의되어야 하며, 배우는 자신이 촬영할 장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배우가 촬영 현장에 나와서야 자신이 찍게 될 장면을 알게 되거나(영화에 투자된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들먹이며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배우에게 압박을 가해 촬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사전에 협의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역시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책임감을 느꼈기에 공식대책위원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오늘 마무리 되지만,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협회 창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권, 소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영화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연대할 것이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곁에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영화계 변화를 위해서 언론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남배우 A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꾸러지기 전 피해자가 한국여성민우회에 상담을 접수한 것은 2016년 1심 재판부 판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여성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건의 해결 뿐만 아니라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많은 일들을 영화계와 함께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영화계 내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를 대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막상 가장 대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의 문제를 짚는 긴급 토론회를 했겠습니까.

특히 D 매체가 중심이 되어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몇 몇의 매체는 이미 형이 확정되어 유죄로 인정된 남배우A의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실어주면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계 내의 성폭력, 합의 없는 연기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간의 ‘진실 공방’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그 언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론이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화계 내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왔던 것들이 미투 라는 거대한 물결이 된 이유를 언론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질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언론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묻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찾아가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가해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해자의 말을 검증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지를 보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을 더 이상 성추문이 아니라 ‘범죄’ 라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정적인 제목을 단다든지, 가해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이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더 선정적으로 보도 한다든지, 구조를 보지 않고 개인의 일탈로만 주목해서 보도하는 등의 언론의 ‘관행’ 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계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는 살아남고 피해자는 사라지는 현실에는 영화계 내의 남성 중심의 카르텔 뿐만 아니라 언론이 이를 공고히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함께 역할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공격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계 내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스웨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영화를 촬영하게 되어 피해자가 어려움을 호소했고 문제제기 끝에 결국 가해자가 그 영화를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하면 니가 그만 뒤’ 의 태도를 취했다면 이제 누가 그만두어야 하는지 영화계는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행’ 이라는 이름하에 합의되지 않는 연기를 강요하고, 영화에 출연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영화인들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들 나서서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일터에서 내쫓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영화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공적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폭력을 당했을 때 바로 상담하고 해결을 함께 모색해 주는, 지금의 ‘든든’ 같은 곳에 공적 자금을 충분히 투여하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태한 방식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영화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관객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화계는 필연적으로 변해야 할 때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계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흐름에 함께 할 것입니다.

[발 언 문]

반민정 (배우)

안녕하십니까, 반민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기보다는, 영화계의 일원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개인으로 영화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쳤고, 이제는 버겁습니다.

만 4년 동안 저는 제 사건이 개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가십거리의 일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잊히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대위’의 연대를 바탕으로 제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그래서 일터에서 저처럼 성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제 신상을 공개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화계 내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계약서 작성 시 노출, 폭력 등에 대한 언급을 명시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거나, 매뉴얼 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있다는 것이 매우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배우의 ‘직접적인 성폭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느라 다른 언급은 가급적 피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건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재포 등 지인들까지 동원해 만든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법적 싸움까지 하느라 만신창이가 되었고, 힘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일부를 말하려고 합니다.

2015년 4월, 사건이 있던 이후,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저는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와 삼자대면을 시키고, 가해자를 바로 하차시켰으며, 제 얘기를 들어주던

감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던 소속사 대표를 믿었습니다. 영화 스태프들과 영화 제작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그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바빴으며, 피해자인 저를 압박했고, 촬영일정도 바꾸거나 알려주지 않으며 지속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시에는 그들을 믿었고, 여성주연이었기에 끝까지 촬영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해 그 몸과 정신으로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저는 영화 촬영 당시 제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난 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받게 된 자료를 보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게 직접 섭외전화를 했던 영화 총괄PD로부터 노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해 소속사 대표와 총괄PD의 계약 체결 후 ‘노출은 없다’ 라는 확인문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신체노출이 없다고 알고 계약을 했으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제출된 영화제작사 대표의 녹취록에서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 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당시 제 소속사 대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연히 계약서를 쓰고, 노출여부까지 검토했으며, 소속사까지 있었던 주연배우인, 연기경력이 오래된 저도, ‘현장’에서 제 의사나 계약내용과는 상관없이 노출을 강요받을 수 있던 겁니다.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여배우 모르게, ‘현장’에서 여배우의 신체노출을 강행하겠다는 영화 제작진들, 해당 배우에게는 사전 고지 없이 상대배우에게만 별도의 연기지시를 하는 감독, 상대 여배우가 없는 상황에서 감독에게 별도의 연기지시를 받고, 그 지시내용대로 할 경우 상대배우에게 고통을 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 알리지 않고 배려 없는 연기를 한 경력 20년 정도의 베테랑 배우. 도대체 한국 영화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폭력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이후에도 피해자인 저와, 영화계 자체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영화계가 나서서 변하고 싸워야 합니다. 무명배우이기는 합시다만, 그래도 한 영화의 주연을 맡고 계약서까지 썼으며, 소속사까지 존재했던 저도 영화촬영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루어졌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성폭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말하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독의 책임 운운하며 가해자에 대한 동정과 옹호를 할 시간에, 영화계 내부에서 반성을 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말의 희망을 놓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젊은 영화인들이 피해자인 저와 연대했으며, 작은 변화이지만 영화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영화계에서 현재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침묵과 방관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배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과거형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며, 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전 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제 사건과 관련해 영화계에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기자들 역시 상대배우와 연기에 대한 사전합의를 해야 하며, ‘연기·에드립’을 핑계로 상대배우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배우의 기본입니다. 영화계 내부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도 지속해야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후 법적 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위해 지원과 연대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사건의 처리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서 저를 외면하는 영화계를 위해 제가 어떤 말을 한들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망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많이 지쳤고 정말 버겁습니다. 제가 왜 싸우는지, 왜 신상을 공개하며 발언하는지, 부디 영화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영화계 내부에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들도 변합니다. 노동권·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를 외면할 경우 영화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외침에 이제 답변을 주십시오.

2018년 11월 6일

반 민 정 올림